

의안번호	2218108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1949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퍼지컬AI산업 육성계획 및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3,100만원(연평균 4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각종 계획 수립 (안 제 41조의8 및 안 제41조의16)	154	-	-	77	-	231	46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 ~안 제30조의4, 안 제30조의6, 안 제30조의7 (수소경제 이행 에 필요한 시범 사업 시행 특례 등)	-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,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소특화산업단지 내에서 시범사업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린수소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(이하 “생산촉진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생산촉진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전해 기기 설비 투자 지원, 생산촉진지역 내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-기후에너지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생산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우선 사용 촉진, 수소출하소와 수소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토교통부장관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¹⁾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“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”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함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·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-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에 수소인공지능시티(이하 이 조에서 “수소AI시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새만금 지역이 수소AI시티로 지정된 경우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,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

		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보조 또는 용자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	
2	안 제32조의3, 안 제32조의4, 안 제32조의5, 안 제32조의10 (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등)	-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「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²⁾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-국가는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국가는 에너지자립도시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,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-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·확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-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41조의2, 안 제41조의3, 안 제41조의6, 안 제41조의7, 안 제41조의8, 안 제41조의9, (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등)	-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, 실증,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·용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등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실증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·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	재량규정

		할 수 있음 -도지사는 로봇, 자율주행 모빌리티, 스마트농업기기,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(이하 “피지컬AI산업”이라 함)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-국가는 피지컬AI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, 창업 및 기업 유지, 전문인력 양성,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국가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·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-도지사는 피지컬AI산업의 시험·검증·인증·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·인증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,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·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통합지원센터 및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
4	안 제41조의11, 안 제41조의12, 안 제41조의13, 안 제41조의15, 안 제41조의16, 안 제41조의17 (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)	-국가는 인공지능·에너지 분야의 산업·기술·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함 -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,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(NPU 등)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구축·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,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(NPU 등) 기반시설 및 연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·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경우, 전북자치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체험·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전북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·물류·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도지사가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	의무규정 재량규정

		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-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, 기술개발,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전북자치도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야 하며,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-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·조정,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지원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대민 행정업무 및 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·운영할 수 있음	
5	안 제41조의18, ~안 제41조의22(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등)	-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음 -도지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,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북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(이하 “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-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도지사는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³⁾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「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·지구·지역⁴⁾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6	안 제41조의23 (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)	-국가는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,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,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,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41조의24 (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)	-국가와 도지사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,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와 도지사는 「국가재정법」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41조의25 (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)	-도지사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군수(이하 "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
(이하 생략)

- 2)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, 세제지원, 연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3)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이하 "시범운행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4)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법률안」 제20조(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·지구·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1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5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
 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·지구·지역 등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~안 제30조의4, 안 제30조의6, 안 제30조의7 (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 사업 시행 특례 등)	×	○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이 되는 시범사업의 내용, 그린수소생산촉진 지역, 그린수소 이용 활성화 사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32조의3, 안 제32조의4, 안 제32조의5, 안 제32조의10 (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등)	×	○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인 에너지특화기업, 분산에너지사업,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의 내용 및 해당 기업·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내용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3	안 제41조의2, 안 제41조의3, 안 제41조의6, 안 제41조의7, 안 제41조의8, 안 제41조의9, (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등)	O	(피지컬AI산업 육성계획 수립)
		×	(재정적 지원 관련) ○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, 실증 사업의 내용 및 각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41조의11, 안 제41조의12, 안 제41조의13, 안 제41조의15, 안 제41조의16, 안 제41조의17 (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)	O	(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)
		×	(재정적 지원 관련) ○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5	안 제41조의18,~안 제41조의22(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등)	×	○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,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 등의 내용 및 각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41조의23(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)	×	○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“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”, “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”, “대기질 측정·분석·검증을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” 등과 같은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각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7	안 제41조의24(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)	×	○ 지원 대상인 새만금 지역 내 구축될 데이터센터의 규모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8	안 제41조의25(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)	×	○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대상이 되는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 대학원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(기본계획 수립 관련) 안 제41조의8에 따른 피지컬AI산업 육성계획, 안 제41조의16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「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(2024)」 연구용역비 16백만원, 「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(2025)」 연구용역비 117백만원, 「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(2025)」 연구용역비 90백만원의 평균액 74백만원을 2025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⁵⁾을 적용하되,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 - 계획별 수립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
 - 피지컬AI산업 육성계획: 5년
 -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: 3년(개정안 근거)
 - 위 수립주기에 따라 피지컬AI산업 육성계획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하고,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과 2030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공포한 날에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각종 계획 수립(안 제 41조의8 및 안 제41조의16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함

5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.)

구분	2025	2026	2027	2028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1	2.3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연구용역비 평균금액 7,400만원을 2025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7년 7,7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가정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퍼지컬AI산업 육성계획은 추계기간 중 2027년에 1회 수립,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과 2030년에 각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라 퍼지컬AI산업 육성계획 및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억 5,400만원 등 5년간 2억 3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퍼지컬AI산업 육성계획 (안 제41조의8)	77	-	-	-	-	77
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(안 제41조의16)	77	-	-	77	-	154
합 계	154	-	-	77	-	23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